

전주도시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의견제시의 건

의안번호	2004 - 32
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제안이유

-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2003.6.27 전면해제 되고, 2003.7.8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등을 합리적으로 변경결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주도시계획(재정비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12조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전주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전주도시계획(재정비)를 하고 있음
- 관련근거 : 구)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

2. 주요내용 -- 별첨 [전주도시계획(재정비)결정(변경)조서 안]

3. 참고사항

- 주민의견청취 사항
 - 주민의견청취기간 : 2004. 1. 12 ~ 1. 26
 - 신 문 계 재 : 전북도민일보, 전라일보(전주시공고 제2004-9호)
 - 공람 및 의견제출 : 우리시 주민의견 없음.

전주도시계획(재정비)결정(변경) 조서

1. 도시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김제시)

가. 도시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시계획구역명	행정구역명	면적(km ²)	비고
기정	전주도시계획구역	김제시 일원	11.06	
변경	전주도시계획구역	김제시 일원	11.06	김제시 11.06km ² 변경없음

나. 행정구역별 면적조서

행정구역명		행정구역 면적(km ²)	도시계획구역(km ²)		변경사유
시군구	읍면동		기정	변경	
김제시	계		11.06	11.06	변경없음
	금구면	42.53	9.12	9.12	
	금산면	66.89	1.94	1.94	
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(김제시)

구분	면적 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 후		
녹지지역	11,060,000.0	-	11,060,000.0	100.0	
보전녹지지역	8,757,010.0	-	8,757,010.0	79.2	
생산녹지지역	253,290.0	-	253,290.0	2.3	
자연녹지지역	2,049,700.0	-	2,049,700.0	18.5	

3.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 (김제시)

가. 미관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 치	면 적 (m ²)	연 장 (m)	폭원 (m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66	미관지구	일반미관지구	호암교 →대로1-3종점	126,220	5,260	12		

□ 미관지구 변경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지구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66	미관지구	○ 신설 ○ 면적:126,220m ²	○ 대로변 미관보호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지구 신설

나. 자연취락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위 치	변경내용	면적 (m ²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214	봉림	금구면 오봉리	증)12,700	12,700		
신설	215	목련	금구면 오봉리	증)12,310	12,310		
신설	216	오산	금구면 오봉리	증)25,330	25,330		
신설	217	양석	금구면 오봉리	증)27,970	27,970		

■ 자연취락지구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14	봉림	○ 신설 ○ 면적 : 12,700m ²	○ GB해제지역내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 도모
215	목련	○ 신설 ○ 면적 : 12,310m ²	○ GB해제지역내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 도모
216	오산	○ 신설 ○ 면적 : 25,330m ²	○ GB해제지역내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 도모
217	양석	○ 신설 ○ 면적 : 27,970m ²	○ GB해제지역내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 도모

전주도시계획(재정비)결정(변경)의견서

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이 2003. 6. 27일 전면해제 되고, 2003. 7. 8일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주도시계획(재정비)을 변경하고자

주민편익을 위해 건축행위가 완화되도록 금구면 오봉리 4개 지구(봉림, 목련, 오산, 양석) 78,310㎡의 자연취락지구 신설 변경은 찬성하며,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

1. 대로 1-3호선 좌.우측에 계획된 미관지구는 김제금구도시계획과 전주시도시계획구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김제시지역은 제외
1. 10호이상 자연취락 중 취락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된 대율. 금천마을은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 되도록 하여야 함
1. 자연녹지지역 중 3개 지구(오봉리 서당골. 지장동, 대화리 산밭실)를 인접 자연취락지구와 묶어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함.
1. 국도변 보존녹지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해야 함

또한,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시도시계획 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을 제척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의견을 재촉구 요망한다.

김제시의회의장